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677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예지 · 엄태영  
우재준 · 이현승 · 김재섭  
운영석 · 김형동 · 김은혜  
서명옥 · 이주영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연금법」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이는 18~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.

또한,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,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 및 제19

조 제1항).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복무기간(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)”을 “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(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)에 그 복무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”을 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(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)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|  |  |
|--|--|
| <p>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<br/>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